

제 45 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

주주님의 건승과 닥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
당사는 상법 제 363 조와 정관 제 23 조에 의하여 제 45 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해서는 상법 제 542 조의 4 및 당사 정관 제 23 조에 의거하여 본 공고로 소집통지를 갈음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1. 일 시 : 2026 년 03 월 24 일 (화) 오전 9 시

2. 장 소 :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토성로 14 화성상공회의소 3 층 세미나홀

3. 회의 목적사항

가. 보고사항

- 감사보고
- 영업보고
-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

나. 부의안건

- 제 1 호 의안 : 제 45 기(2025.01.01~2025.12.31) 재무제표 승인의 건
- 제 2 호 의안 : 주식(액면)병합 승인의 건 (별첨 1)
- 제 3 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 (별첨 2)
- 제 4 호 의안 : 이사 선임의 건 (별첨 3)
제 4-1 호 의안 : 사내이사 김유정 선임의 건
- 제 5 호 의안 :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(별첨 4)
- 제 6 호 의안 :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(별첨 5)

4. 경영참고사항 비치

상법 제 542 조의 4 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, 금융위원회,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5.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
주주님께서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. 또한 아래의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.

6.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

당사 「상법」 제 368 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 13 조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.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.

가. 전자투표 시스템

- 인터넷 주소 : <https://evote.ksd.or.kr>
- 모바일 주소 : <https://evote.ksd.or.kr/m>

나. 전자투표 행사기간

- 2026년 3월 14일 오전 9시 ~ 2026년 3월 23일 오후 5시
(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)

다. 행사방법

-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 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
-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: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(K-VOTE 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)

라. 수정동의안 처리

-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

7.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

- 직접행사 : 주주총회 참석장,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중 1개 지참)
- 대리행사 : 주주총회 참석장, 대리인의 신분증, 위임장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,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)

8. 기타사항

- 당사의 경비 절감을 위하여 주주총회 기념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.

2026년 03월 09일

화일약품 주식회사
대표이사 조경숙 (직인생략)

(별첨1) 제2호 의안 : 주식(액면)병합 승인의 건

1. 주식병합 목적 :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를 통한 주가 안정화 및 기업가치 제고
2. 주식병합 내용 :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0주를 액면가 5,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

| 구분 | | 병합 전 | 병합 후 | 비고 |
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|
| 1주당 가액(원) | | 500 | 5,000 | |
| 발행주식총수 | 보통주식(주) | 84,175,847 | 8,417,584 | |
| | 종류주식(주) | - | - | |
| 자본금(원) | | 44,017,513,500 | 44,017,510,000 | -3,500 |

3. 주식병합 일정

| 구분 | 일자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주식병합 이사회 결의일 | 2026년 03월 06일 |
| 주주총회 예정일 및 병합 기준일 공고일 | 2026년 03월 24일 |
|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| 2026년 04월 07일 ~ 2026년 04월 30일 |
| 권리배정 기준일(신주배정 기준일) | 2026년 04월 08일 |
| 병합 기준일(신주의 효력발생일) | 2026년 04월 09일 |
| 신주의 상장예정일 | 2026년 05월 04일 |

4. 단수주 처리방법 : 주식병합으로 발생하는 단수주는 ‘신주상장 초일 종가’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 예정
5. 기타사항 : 상기 병합 내용과 일정은 관련 법규의 적용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, 기타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.

(별첨2) 제3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

| 현행 | 개정 | 개정이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 6 조 (1주의 금액) 당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500원으로 한다. | 제 6 조 (1주의 금액) 당회사가 발행하는 <u>주식 1주의 금액은 금 5,000원</u> 으로 한다. | 주식병합 |
| 제 24 조 (소집지) 1. (생략) 2. (신설) | 제 24 조 (소집지와 개최방식) 1. (현행과 동일) 2. <u>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법 제 542조의14 제1항에 따라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.</u> | 상법 제364조, 제542조의14 및 15 개정 |
| 제 30 조 (의결권의 대리행사) 1. (생략) 2.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일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(위임장)을 제출하여야 한다. | 제 30 조 (의결권의 대리행사) 1. (현행과 동일) 2.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일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<u>서면 또는 전자문서</u> 를 제출하여야 한다. | 상법 제368조 제2항 개정 |
| 제 33 조 (이사의 수) 당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6명 이내로 한다. 회사는 필요시 약간 명의의 사외이사를 둘 수 있다. | 제 33 조 (이사의 수) 당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6명 이내로 <u>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.</u> | 상법 제542조의8 등 개정 |
| 제 38 조의 2 (이사의 보고의무)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나 감사위원회위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 | 제 38 조의 2 (이사의 보고의무)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<u>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</u> | 문구수정 |
| 제 38 조의 3 (이사의 의무) 1.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 2. (신설) 3~4. (생략) | 제 38 조의 3 (이사의 의무) 1.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<u>회사 및 주주</u> 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 2. <u>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,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하여야 한다.</u> 3~4. (현행과 동일) | 상법 제382조의3 개정 |
| 제 42조의 2 (이사의 책임감경)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(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)의 6배(사외이사는 3배)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. 다만,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 | 제 42조의 2 (이사의 책임감경)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(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)의 6배(<u>독립이사는 3배</u>)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. 다만,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 | 상법 제542조의8 등 개정 |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<p>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, 제397조의 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| <p>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, 제397조의 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| |
| <p>제 51 조 (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) 1. (생략) 2.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3.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4~5. (생략) 6.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,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회의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. 7~8. (생략)</p> | <p>제 51 조 (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) 1. (현행과 동일) 2.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 제출하여야 한다. 3.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4~5. (현행과 동일) 6.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,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회의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. 7~8. (현행과 동일)</p> | <p>문구수정</p> |
| <p>제 52 조 (외부감사의 선임)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'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'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,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.</p> | <p>제 52 조 (외부감사의 선임)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'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'의 규정에 따라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,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.</p> | <p>문구수정</p> |
| <p>제 54 조 (이익배당) 1. (생략) 2.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. 3~4. (생략)</p> | <p>제 54 조 (이익배당) 1. (현행과 동일) 2. 이 회사는 이사회회의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,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 3~4. (현행과 동일)</p> | <p>배당 예측가능성 제고</p> |
| <p>부 칙 (생략)</p> | <p>부 칙 (추가) 이 정관은 202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4조, 제30조는 2027년 1월 1일부터, 제33조, 제38조의3, 제42조의2는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.</p> | <p>부칙추가</p> |

(별첨3) 제4호 의안 : 이사 선임의 건

제4-1호 의안 : 사내이사 김유정 선임의 건

| 성명 | 출생년월 | 주요경력(현직포함) | 최대주주와의 관계 | 회사와의 거래 | 추천인 | 비고 |
|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|----------|
| 김유정 | 1988.08 | University of Toronto, Human Biology 졸업 성균관대학원, MBA 석사 졸업 現) 에스씨엠생명과학(주) 대표이사 | 해당사항 없음 | 해당사항 없음 | 이사회 | 신규 선임 |

※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·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·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

| 성명 | 체납사실 여부 |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|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|
|-----|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김유정 | 해당사항 없음 | 해당사항 없음 | 해당사항 없음 |

(별첨4) 제5호 의안 :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
| 구분 | 당기(제46기) | 전기(제45기)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이사의 수(사외이사수) | 4(1) | 5(2) |
|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| 30억원 | 30억원 |

(별첨5) 제6호 의안 :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
| 구분 | 당기(제46기) | 전기(제45기)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감사의 수 | 1 | 1 |
|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| 1억원 | 1억원 |